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09월 20일

진도읍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문**	문** 1962-02-11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9-20